

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부지무상대부동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83
------	----

2002. 12.
재정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2년 11월 7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2년 11월 8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3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
(2002년 12월 27일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산업경제국장 김 흥 권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시에서는 중소기업체의 제품홍보 및 판로지원을 위해 여의도·잠실·창동전시장 등을 설치·운영하고 있음.
- 이중 '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'은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'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'에서 건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동 전시장은 '96년 8월에 개관해서 우리시가 그 동안 1년, 또는 6개월 단위로 부지를 무상대부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, 금년 12월 31일로 대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무상대부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음.
- 여의도부지는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IMF 당시 우리 시에서 외자 투자 유치 사업을 목적으로 매각을 추진했으나 두 번 유찰된 바 있고,
- 현재 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방안이 없는 상태로 향후 좀더 시간을 갖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,
- 서울의 중소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전시장이 아직까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은 현재의 시설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여의도 부지의 무상대부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 (잡종재산의 대부)에 따른 것으로
- 현재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2003.1.1부터 6.30일까지 무상대부하는 내용임.

다. 무상대부재산현황

- 명 칭 :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부지
- 위 치 : 영등포구 여의도동 23, 23-1 일부(구 안보진시장)
- 규 모 : 대지 2필지 26,562m²(8,035평)
※ 시설물 : 3,913평(전시장 2,818평, 판매장 608평, 기타 487평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남중)

《총괄부문》

- 영등포구 여의도동 23과 23-1 소재 서울시 소유 부동산 26,562m²를 전시판매장 부지로 2003년 1월 1일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무상 대부토록 동의를 요청하는 것임.

《세부사항》

- 1995년 5월 29일 서울시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협정을 체결
- 서울시 : 부지무상제공, 행정지원

- 중기협 : 시설설치 및 전시판매장을 운영
- 이익금 발생시 시의 동의하에 중소기업지원에 사용토록 약정
- 최초 사용(1995. 7. 1 ~ 1997. 6.30)
 - 1차 연장(1997. 7. 1 ~ 1999. 6.30)
 - 2차 연장(1999. 7. 1 ~ 2000.12.31)
 - 3차 연장(2000. 1. 1 ~ 2001. 6.30)
 - 4차 연장(2001. 7. 1 ~ 2001.12.31)
 - 5차 연장(2002. 1. 1 ~ 2002.12.31)
- 95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7년 6개월 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하였고, 이번에 6개월 동안 더 사용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한 것임.
- 제121회 임시회(2000. 9. 6)에서 동 부지를 국내·외 투자기업에 매각토록 수정 의결한 후 매각을 추진하였으나, 2회에 걸친 유찰로 부지매각이 어려워졌으나,
- 2002년 11월 8일 신문보도에 따르면 “서울시는 내년초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장을 업무용건물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할 계획이다. 입찰조건을 호텔·컨벤션 용도에서 업무용빌딩과 오피스텔 용도로 변경해서 내년 초 시의회 임시회 때 시유재산 변경계획을 승인받아 공개 입찰할 계획이다.”라고 보도된 것으로 보아
- 서울시는 내년초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이 부지를 재차 매각할 계획이며, 매각되기 전까지는 중소기업지원차원에서 무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부하는 것이므로 약정 내용대로 서울시는 이익금발생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중소기업지원사업에 제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적위원 13명, 출석위원 9명, 전원일치)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부지 무상대부 동의안

서울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시설을 설치·운영하기로 합의한 '95.5.29일자 협정에 의거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2003.1.1부터 2003. 6.30까지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동 부지를 무상대부하는 데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한다.

□ 무상대부 재산현황

- 명 칭 :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부지
- 위 치 : 영등포구 여의도동 23, 23-1 일부(구 안보전시장)
- 규 모 : 대지 2필지 26,562㎡(8,035평)
 - ※ 시설물 : 3,913평(전시장 2,818평, 판매장 608평, 기타 487평)

□ 무상 대부기간 : 2003. 1. 1 ~ 2003. 6. 30

□ 무상 대부조건 :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4항 등 우리 시에 필요한 조건 부여

※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4항

제1호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는 즉시 이에 응할 것

제2호 : 대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부목적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, 대부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